

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

(의안번호 제424호)

예비심사보고서

1997. 6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23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5. 23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6. 1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일반회계

- 지출결정액 : 198,602,000원
- 지출액 : 119,327,000원
- 이월액 : 67,198,460원
- 불용액 : 12,076,540원
- 지출내역

- 민원발급 실시에 따른 긴급 FAX기 구입 및 설치비 : 15,176,400원
- 벼밀구 급학산 예상 병해충 방제비 : 36,341,000원
- 97. 도로사업계획의 내무부 승인용 도로망 제작비 : 14,000,000원
- 산불예방 전화용 민간헬기 임차 권역별 부담금 : 12,000,000원
- 와도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: 70,267,060원
- 고성읍, 회화, 마암면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한 부족분 통급 : 38,741,000원

나. 특별회계 : 예비비지출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예비비지출은 관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면 승인되어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되도록이면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세심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토론

- 문 :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은
- 답 : 1회추경후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보됨으로 인한 것임.

5. 심사결과

-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